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512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의안명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발의일 (제출일) | 심 사 경 과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7호) | 박충권의원 | 2024.5.31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3호) | 김정재의원 | 2024.6.13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78호) | 김성원의원 | 2024.6.18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59호) | 박대출의원 | 2024.6.20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83호) | 박대출의원 | 2024.6.21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3호) | 이상식의원 | 2024.7.1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61호) | 김태년의원 | 2024.7.3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 | | 1405 75/2015/ 15/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31호) | 김종양의원 | 2024.7.5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50호) | 황정아의원 | 2024.7.8 | 소위 심사·의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57호) | 김상훈의원 | 2024.7.8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84호) | 박수영의원 | 2024.7.8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26호) | 김영진의원 | 2024.7.9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27호) | 한병도의원 | 2024.7.15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56호) | 정성호의원 | 2024.7.17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51호) | 정성호의원 | 2024.7.18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80호) | 조지연의원 | 2024.7.19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2호) | 이인선의원 ·조승래의 원 | 2024.7.19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63호) | 정성호의원 | 2024.7.22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83호) | 이병진의원 | 2024.7.22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25호) | 이병진의원 | 2024.7.23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73호) | 이병진의원 | 2024.7.24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86호) | 최은석의원 | 2024.7.24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35호) | 이해식의원 | 2024.7.31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66호) | 박성훈의원 | 2024.8.1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09호) | 정진욱의원 | 2024.8.20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33호) | 박수영의원 | 2024.8.21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85호) | 윤준병의원 | 2024.8.22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37호) | 김승수의원 | 2024.8.23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90호) | 박수민의원 | 2024.8.26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09호) | 박상혁의원 | 2024.8.28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91호) | 박수민의원 | 2024.8.29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697호) | 최민희의원 | 2024.9.5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21호) | 박지혜의원 | 2024.9.5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57호) | 정연욱의원 | 2024.9.6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73호) | 이병진의원 | 2024.9.10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53호) | 강준현의원 | 2024.9.26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29호) | 이인선의원 | 2024.10.10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67호) | 정성호의원 | 2024.10.11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40호) | 박성훈의원 | 2024.10.17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차 조세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소위 심사·의결 |

| | | | - 1 410위 그위/카리의\ 기르다 - 1 크 |
|--------------------------------|---------------|------------|----------------------------|
|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
| | | |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
| 조세특례제한법 | | |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
|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식의원 | 2024.10.18 | 부, |
| (제4779호) | 10796 | 2024.10.10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
| (/114773/2) | | | 차 조세소위 심사, |
| | |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 | | 소위 심사·의결 |
|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
| | | |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
| 조세특례제한법 | | |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
| 소세득네세인됩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 2024 10 10 | 부, |
| | 성성모의전 | 2024.10.18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
| (제4780호) | | | 차 조세소위 심사, |
| | |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 | | 소위 심사·의결 |
| | | 2024.10.22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
| | | |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
| 고계트게케됬버 | | |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
| 조세특례제한법 | 허성무의원 | | 부, |
| 일부개정법률안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
| (제4825호) | | | 차 조세소위 심사, |
| | |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 | | 소위 심사·의결 |
|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
| | | |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
| フ계든레케쉬버 | | |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64호) | ul & Al Al Al | 00041000 | 부, |
| | | 2024.10.23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
| | | | 차 조세소위 심사, |
| | |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 | | 소위 심사 의결 |

|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
|---------------------|-----------|------------|--|
| | | |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
|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
| 일부개정법률안 | 안도걸의원 | 2024.10.25 | 부, |
| (제4923호)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
| (,, 1020 =) | | | 차 조세소위 심사, |
| | |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 | | 소위 심사·의결 |
|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
| | | |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
| 고게트레케쉬버 | | |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
| 조세특례제한법 | 그 그 기 시 이 | 000410.00 | 부, |
| 일부개정법률안 | 천하람의원 | 2024.10.28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
| (제4944호) | | | 차 조세소위 심사, |
| | |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 | | 소위 심사·의결 |
| |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 |
| | | | 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제 |
| | | | 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
| 조세특례제한법 | | | 부, |
|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대의원 | 2024.10.28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6 |
| (제4983호) | | | |
| | | | 차 조세소위 심사, |
| | |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조세특례제한법 | | | 소위 심사·의결 소의 지저하브(2024 11 29) |
| | 실어됩이이 | 000410.00 | 소위 직접회부(2024.11.28.), |
| 일부개정법률안 | 이연희의원 | 2024.10.29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제5001호) 조세특례제한법 | | | 소위 심사·의결 소위 직접회부(2024.11.28.), |
| | 기어디아이이 | 2024 10 20 | 조귀 즉립되는(2024.11.20.7),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 | 2024.10.30 | |
| (제5069호) 조세특례제한법 | | | 소위 심사·의결 소위 직접회부(2024.11.28.), |
|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호의원 | 2024.10.31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 성네모커전 | 2024.10.31 | |
| (제5148호) 조세특례제한법 | | | 소위 심사·의결 소위 직접회부(2025.2.10.) |
|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희의원 | 2024.11.4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 'ㅁㅂ쒸커전 | 4044.11.4 | |
| (제5230호) | | |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 | | 소위 직접회부(2025.2.10.) |
|----------|-------|------------|----------------------|
| 일부개정법률안 | 김은혜의원 | 2024.11.7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제5359호) | | |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 | | 소위 직접회부(2025.2.10.) |
| 일부개정법률안 | 조인철의원 | 2024.11.12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제5485호) | | |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 | | 소위 직접회부(2025.2.10.) |
|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 2024.11.13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제5525호) | | |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 | | 소위 직접회부(2025.2.10.) |
|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관의원 | 2024.11.14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제5556호) | | |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 | | 소위 직접회부(2025.2.10.) |
| 일부개정법률안 | 천하람의원 | 2024.11.21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제5780호) | | | 소위 심사·의결 |
| 조세특례제한법 | | | 소위 직접회부(2025.2.10.) |
| 일부개정법률안 | 김건의원 | 2025.2.4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 |
| (제7895호) | | | 소위 심사·의결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위 5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 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 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

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안 제77조 및 제133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형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p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안 제86 조의3제1항 및 제4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인

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함.

마. 노후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제109조의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함.

4. 부대의견

- 가. 기획재정부는 가구유형에 따른 생계수준, 최근 지급대상 확대, 홑벌이, 맞벌이간 소득 및 가구구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점감구간 시작점의 격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나. 기획재정부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산업의 R&D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보조 인력 인건비, 주요 재료비(포토 마스크 비용, EDA S/W 경비 등)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
- 라.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대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전 년도 조세지출 실적 등을 분석하여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7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을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를 "한다)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하며, 같은 목 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4)[종전의 3)] 가)부터 라)까지의 외의 부분 중 "1) 및 2)"를 "1)부터 3)까지"로 한다.

- 3)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2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2023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각 과세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 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 한다.

-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 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 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 3)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

- 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가목 2)에 따른 금액
- 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 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 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3)에 따른 금액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를 "이 조"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

제29조의8제1항제1호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단절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또 는 제4항"을 각각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지났을 것
-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제30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청년, 60세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경력단절 여성은"을 "경력단절 근로자는"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 라 한다)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 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 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 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 1.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경우
- 2.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 확한 경우

- 3.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 가.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차입금
 - 나.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 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채권으로 전환한 차입금
-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 다.
- 1.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라 대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 3. 출자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출자, 대여금의 전환, 출자법인 차입금 상환에 관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양도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중 "이내에"를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해"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29조의8제3항·제4항"을 "제29조의8제4항·제5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

0분의 1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5"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제2호 중 "1억원"을 "6천만원"으로, "400만원"을 "5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제86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 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 다.

1.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2. 해지사유

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건설사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대여금등"을 "제1항에 따른대여금등 및 제4항에 따른 출자전환차액상당액"으로 한다.

- ④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그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대여금등"이라 한다)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한다)의 시가가 출자전환일 현재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과 주식등의 시가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이라한다)에 제5항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본다.
- 1. 출자전환대여금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출자전환대여금등을 출자전환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 3.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에 해당할 것

- ⑤ 제4항에 따른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출자전환차액상당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있는 기간은 해당 금액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9개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⑦ 제4항에 따라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1. 내국법인이 제4항에 따라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 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2.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해외건설자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국내 (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

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2제1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 로, "2019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30"을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04조의30"을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을 "제7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0조, 제77조, 제

77조의2, 제77조의3"을 "제7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를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로 한다.

- ② 개인이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1.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2. 5개 과세기간의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4조의32"를 각각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 용한다.
- 제3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 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 ②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국가전략 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 정규정 중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 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 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 ② 제24조제1항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 2)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 3)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 제6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29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제8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0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1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 ② 제86조의3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2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3조(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부터 적용한다.
- 제14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 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 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15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1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3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이법 시행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
|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 | 감면) ① |
| 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 | |
| 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 | |
| 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 |
|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 | |
| 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 | |
| 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 | |
| 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 | |
| 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 |
|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 |
|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 |
| 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 |
|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 2 |
|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
| 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 | |
| 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 | |
| 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 | |
| 을 곱한 비율로 한다. | |

가. ~ 라. (생 략) <u><신 설></u>

바. (생략)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 지 발생한 해당 연구 · 인력개발 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 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 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

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ll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 대한 |
|-----------------------|-----|
| 세액공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u>2029년 12월 31일(</u> | 제2호 |
| 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 | |
| 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 | |
| 일) | |
| | |
| | |
| | |

- 1. (생략)
- 2. 연구 · 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 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 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 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 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 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 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 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 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

가. • 나. (생 략)

- 3. (생략)
- ②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 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 1. (현행과 같음) |
|------------------|
| 2 |
| |
|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
|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 가.·나. (현행과 같음) |
| 3. (현행과 같음)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 |
| |
| |
| |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 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 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 인세에서 공제한다. <후단 신 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 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 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 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 액
 - 1) 신성장 · 원천기술의 사

| <u>합</u> 한 |
|-----------------------|
|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
|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 |
| 을 합한 금액 |
| |
| |
| |
| <u>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u> |
| 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 |
| 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 |
| 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 <u><단서 삭제></u> |
| 1. (현행과 같음) |
| 2 |
| 가 |
| |
| |
| |
| _ |
| 1) |

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가) ~ 라) (생 략)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한다) 및 |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 |
| |
| 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
|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 |
| 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 |
| 설"이라 한다)에 투자하 |
| <u>는 경우</u> |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2) |
| |
| |
| |
| 쥐리) 미 |
| <u>한다) 및</u>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
| <u>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u> |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 |
| <u>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u> |
| 설"이라 한다)에 2029년 |
|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
| <u>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u> |
| 는 제외한다] |
| <u>ㄴ /비의 인의]</u> |

가) ~ 다) (생 략) <u><신 설></u>

3) 1) 및 2)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 라) (생략) 나.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
 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
 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
 우
 - <u>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u> 분의 30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 <u>다) 가) 및 나) 외의 경우:</u> 100분의 20
- 4) 1)부터 3)까지 -----

가) ~ 라)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3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 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 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
 -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
 자하는 경우: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
 에 상당하는 금액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

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 3 -----
 - <u>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u> 분에 따른 금액
 - 1) 2023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 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한다.
 -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 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 나)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
 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 나)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 3) 2025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대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 에 투자하는 경우: 100 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 은 100분의 14)에 상 당하는 금액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에 투자 하는 경우[다)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제2호가목2)에 따 른 금액

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 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 기술연구개발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3)에 따른 금액

3)까지에 따른 각 과세연도

나. 추가공제 금액: <u>2023년 12</u> 나. ----- <u>가</u>목1)부터 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한도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 <u>.</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5 |
| |
| |
| |
|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 |
| 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 |
|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
| <u>시설</u> |
| |
|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 |
| 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
| <u>이 조</u> |
| |
| |
|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 3. (생략)
- ② ~ ⑥ (생 략)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

| | _ |
|---|--------|
| | _ |
| | _ |
| | - |
| | _ |
| | _ |
| | _ |
| | _ |
| | _ |
| <u>.</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 ① | |
| ② ~ ⑤ (연양과 실금)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기 | 아 아 |
| ② ~ ⑥ (연맹과 됱금)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4 | |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 <i>7</i>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È |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기 | È |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⁴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È |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⁴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È |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⁴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È |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⁴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È |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⁴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È |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⁴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È |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⁴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È |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⁴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È |

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 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 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 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 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 설>

1. • 2. (생략)

②·③ (생 략)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저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

| <u>다만, 해당</u> |
|--------------------|
|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 |
| 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 |
|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 |
| 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
|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
|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
| <u> </u> |
| 1. · 2. (현행과 같음)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세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 |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 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 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 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 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 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 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 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 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

| 1 |
|-----------------|
| |
| <u>경력단절 근로자</u> |
| |
| |
| |
| |
| |
| |
| |

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 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 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생략)

<신 설>

| | |
|------|------|
| | |
| | |
| | |
| | |
| | |

- 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 한다.
-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 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

② ~ ④ (생 략)

- <u>⑤</u>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 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 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 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 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 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 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 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 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 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 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 1 1 L 1 L L L 1 / L |
|---|
| 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 |
| 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underline{3} \sim \underline{5}$ (현행 제2항부터 제4 |
| 항까지와 같음) |
| ⑥ 제5항 |
| |
| <u>.</u> |
| <u>⑦</u> 제4항 또는 제5항 |
| |
| |
| |
| |
| |
| |
| |
| |
| <u>제</u> |
| <u>4항 또는 제5항</u> |
| |
| |
| |
| |
| |
| |
| <u>⑧</u> <u>제4항 또는 제5항</u> - |

우에는 대표자를 막한다) 또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 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 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 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 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 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 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 ⑨ 제5항 |
|----------------------------|
| |
| |
| |
| |
| |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
| 소득세 감면) ① <u>청년, 60세 이</u> |
| 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 |
| 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
| (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 |
| 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
| <u> 정하는 사람</u> |
| |
| |
| |
| |
| |
| |
| |
| F 9 |
| <u>[대</u> |
| 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
|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

경우에는 5년]--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 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 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 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 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 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 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 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 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 · 분할 · 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 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 ⑦ (생 략)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
 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u>경력단절 여성은</u> 제 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8 |
| |
| <u></u> 경력단절 근로자는 |
| |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생략)

<신 설>

| | |
|------|--|
| | |
| | |
| | |
| | |
| |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 이 해당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 이라 한다)의 재무구조를 개선 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 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 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 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 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 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 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 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 금에 산입한다.

- 1.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 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 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경우 2.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 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 을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 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 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
- 3.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 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

환한 경우

하는 차입금(재무구조개선계 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 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환에 사 용한 경우

- <u>가.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u> <u>에 피출자법인에 출자한</u> 차입금
- 나.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차입금
-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u>할</u> 세액으로 본다.

- 1.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라 대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대여금을 출자전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 3. 출자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 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 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 법인은 출자, 대여금의 전환, 출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등에 관 |
|--------------------|
| 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
|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⑤ 제1항에 따른 양도 시기, 재 |
| 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 |
|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 |
| 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
| <u>한다.</u> |
|]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
| 세액공제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법인 차입금 상환에 관한 이

- 1. (생략)
- 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 ③ (생 략)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 1. (현행과 같음) |
|----------------------------|
| 2 |
| |
| |
| |
| |
| - <u>100분의 15(「재난 및 안전</u> |
| 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 |
| 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
|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 |
| 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 |
| |
| <u>우에는 100분의 30)</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
|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u> 등</u>) ①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 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 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 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 면한다.

- 1. 세액감면 요건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 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 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 내에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나. ~ 다. (생 략)

- 2. (생략)
- ② ~ ⑨ (생 략)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 세 과세특례) ① (생 략)
 -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2

| 1 |
|--------------------|
| 가 |
| |
| |
| <u>-</u> |
| |
| |
| |
| 이내에 |
| 동일한 공장에 대해 |
| |
| 나. ~ 다. (현행과 같음) |
| 2. (현행과 같음) |
| ② ~ ⑨ (현행과 같음) |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
| 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 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 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 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 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 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 조의6, 제26조, 제28조, 제28조 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 까지, 제29조의8제3항 • 제4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 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 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

| <u>제29조의8제4항 • 제5항</u> |
|------------------------|
| |
| |
| |
| |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세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 |
| |
|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 |
| |
| |
| |

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 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 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 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 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 3.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 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

| <u>100분의 15</u> |
|------------------|
| [|
| |
| 100분의 20으로 |
| |
| |
| |
| |
| |
| |
| |
| 100분의 35 |
| <u>100분의 45</u> |
| |
| 1. ~ 3. (현행과 같음) |
| ②・③ (현행과 같음) |
| 4 |
| |
| <u>100분의 35</u> |
| |
| 100분의 45 |
| |

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⑤ 삭 제
- ⑥ ~ ⑨ (생 략)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 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 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 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 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 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⑥ ~ ⑨ (현행과 같음) |
|-------------------|
|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 |
| 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 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 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 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생략)
-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 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 하인 경우: 400만원 <신 설>

3. (생략)

② · ③ (생 략)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 업 · 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

| 1. (현행과 같음) |
|---|
| 2 |
| <u>6천만원</u> |
| <u>500만원</u> |
|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 |
| |
| 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 |
| 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 하인 경우: 400만원 |
| |
| 하인 경우: 400만원 |
| <u>하인 경우: 400만원</u> 4. (현행 제3호와 같음) |
| 하인 경우: 400만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하인 경우: 400만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 하인 경우: 400만원4. (현행 제3호와 같음)② · ③ (현행과 같음)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 |
| 하인 경우: 400만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 |

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 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 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 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 액의 누계액

⑤ ~ ⑧ (생 략)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①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u>해외건설사업자</u>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이하 "해외건설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

<u>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u> 한다.

1.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 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 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 액의 누계액

2. 해지사유

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 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 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 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해지된 경우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① ----- <u>해외건설</u> 사업자(이하 "해외건설사업자" 라 한다)----- 건을 모두 갖춘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이하 이 조에서 "대여금등"이 라 한다)의 대손(貸損)에 충당하 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그 대손 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등 회수가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 해당할 것
- ②・③ (생 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
|------------------|
| 4 |
| |
| |
| |
| |
| |
| |
| 말한다. 이하 이 조에 |
| 서 같다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 |
| 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 |
| |

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출 자전환대여금등"이라 한다)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시가가 출자전환일 현 재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과 주식등의 시가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이라 한 다)에 제5항에 따른 한도를 적 용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 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본다.

- 1. 출자전환대여금등이 제1항제

 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출자전환대여금등을 출

<신 설>

④ (생 략) <신 설>

- <u>자전환한 이후 5년 이상 경과</u> 하였을 것
- 3.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 이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 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경우에 해당할 것
- ⑤ 제4항에 따른 출자전환차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출자 전환차액상당액에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 사의 순자산 장부가액(0보다 작 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자전환차 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금액을 최초 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9개 사업연도의 기간으 로 한정한다.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⑦ 제4항에 따라 출자전환차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금산입 특례 신청절차, 제출서 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 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1. 내국법인이 제4항에 따라 출 자전환차액상당액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 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 자산 장부가액(0보다 작은 경 우에는 0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 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2.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 득한 주식등을 처분(해외건설 자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의 손 📗 ⑧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 및 제 4항에 따른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이하 이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u>2014년</u> 12월 31일 ----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u>2009</u> 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 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 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 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 자동차"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 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 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 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 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 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 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 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 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 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 ⑤ (생 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저

 ③ (생 략)

| <u>2024년 12</u> |
|-----------------------|
| 월 3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ll 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
| ③ (현행과 같음) |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 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 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 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 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 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 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 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 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 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제</u> |
| 104조의25, 제104조의35 |
| |
| |
| |
| |
| |
| |
| |

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 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⑤ ~ ① (생 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 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 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 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 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 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 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 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 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 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 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 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 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

| ⑤ ~ ⑪ (현행과 같음) |
|----------------------|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 |
| 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제104</u> 조의30, 제1 |
| 04조의35 |
| |
| |
| |
| |
| , |
| |

정한다)한다.

② ~ ④ (생 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 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 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 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 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 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 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 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 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 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 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 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 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
|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 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 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 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 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 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 니한다.

- 1. 삭 제
- 2. (생략)
-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

| 2. (현행과 같음) |
|-------------|
| 3 |
| |
| |
| |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② ~ ④ (생 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 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합계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 <u>제104조의30, 제104조</u> |
|--|
| <u> 의35</u> |
| |
| |
| 4. (현행과 같음) |
| 4. (현행과 같음)② ~ ④ (현행과 같음)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② ~ ④ (현행과 같음) 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 |
| ② ~ ④ (현행과 같음) 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 |
| ② ~ ④ (현행과 같음) 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 |
| ② ~ ④ (현행과 같음) 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 면의 종합한도) ① |
| ② ~ ④ (현행과 같음) 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 면의 종합한도) ① |
| ② ~ ④ (현행과 같음) 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 면의 종합한도) ① |
| ② ~ ④ (현행과 같음) 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 면의 종합한도) ① |
| ② ~ ④ (현행과 같음) 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 면의 종합한도) ① |
| ② ~ ④ (현행과 같음) 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 면의 종합한도) ① <u>제70조</u> |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 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생략)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 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부터 <u>제69조의4까지, 제70</u> 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

| . |
|----------------------|
| 1 |
| |
| <u>제70조</u>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
| 나 |
| 9. |
| |
| <u>제69조의4까지 또는 제</u> |
| 70.7 |
| <u>70조</u> |
| |
| |

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신 설>

| | | | |
|------|------|------|-------|
| | | | |
| | | | |
| | | | - |

② 개인이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1.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 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 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 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
- 2. 5개 과세기간의 제77조, 제77 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 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 이 경우 5개 과 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 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
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
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

| 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
|--------------------|
| 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 |
| 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 |
| 액으로 계산한다. |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 |
| <u> </u> |
| |
| |
| |
| |
| |
| |
| |

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 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 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 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 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 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 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 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 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 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 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 <u>利</u> |
|-------------------|
| 104조의32, 제104조의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 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 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 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 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 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 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 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 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 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 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 다.

③ (생

략)

| <u>제104조의32,</u> |
|------------------|
| 제104조의35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